

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효나눔노인복지센터

1. **계약기간** :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단,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,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2. **계약목적**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1)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3)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1)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-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총 수가금액 × 본인부담율)을 수급자로 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.
-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. <표1,4>
-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,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-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2)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-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. <표2>

3)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-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. <표3>

4) 기타 비용부담

-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)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제공범위와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④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
2)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.
-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.
- ⑦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
-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.

5.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

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의무
- ②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- ③ 수급자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④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서비스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- ⑥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- ⑦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

2) 수급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-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

3) 수급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이용자(대상자)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·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⑥ 이용자(수급자)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
6. **계약의 해제**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) **수급자의 해제 요건**

-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
- ②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) **기관의 해제 요건**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7. **기타**

- 1)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(보호자)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,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,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, 180분, 150분, 120분, 90분, 60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- 2)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기간, 서비스내용 및 시간, 서비스 장소,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, 급여제공범위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,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한다.
- 3)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,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(2025.07.01.기준)

※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1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[표1]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월 한도액 (원)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)

[표2] 방문요양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산정 기준

분류번호	문 류	금액(원)
가-1	30분 이상	16,940
가-2	60분 이상	24,580
가-3	90분 이상	33,120
가-4	120분 이상	42,160
가-5	150분 이상	49,160
가-6	180분 이상	55,350
가-7	210분 이상	61,670
가-8	240분 이상	68,030

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)

[표3] 방문목욕서비스 1회당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류번호	문 류	금액(원)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6,480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7,970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

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)

[표4]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수급자	15% 부담
보험료 감경대상자 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	9.0% 부담
차상위,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, 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금액 25%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.0% 부담
기초수급자	0% 부담